

	<h2 style="margin: 0;">직원인사위원회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5-0-21	
			제정일자	2013.08.01	
	개정일자				
	개정번호	Ver. 0	총페이지	1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교법인 동양학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양미래대학교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총무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이 위원이 된다. 간사는 직원 중 1명을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, 총장의 위촉을 받은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회의소집 등)** ① 직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5조(의결 제척사유)** 위원장 또는 위원 자신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**제6조(준용)**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규칙 등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